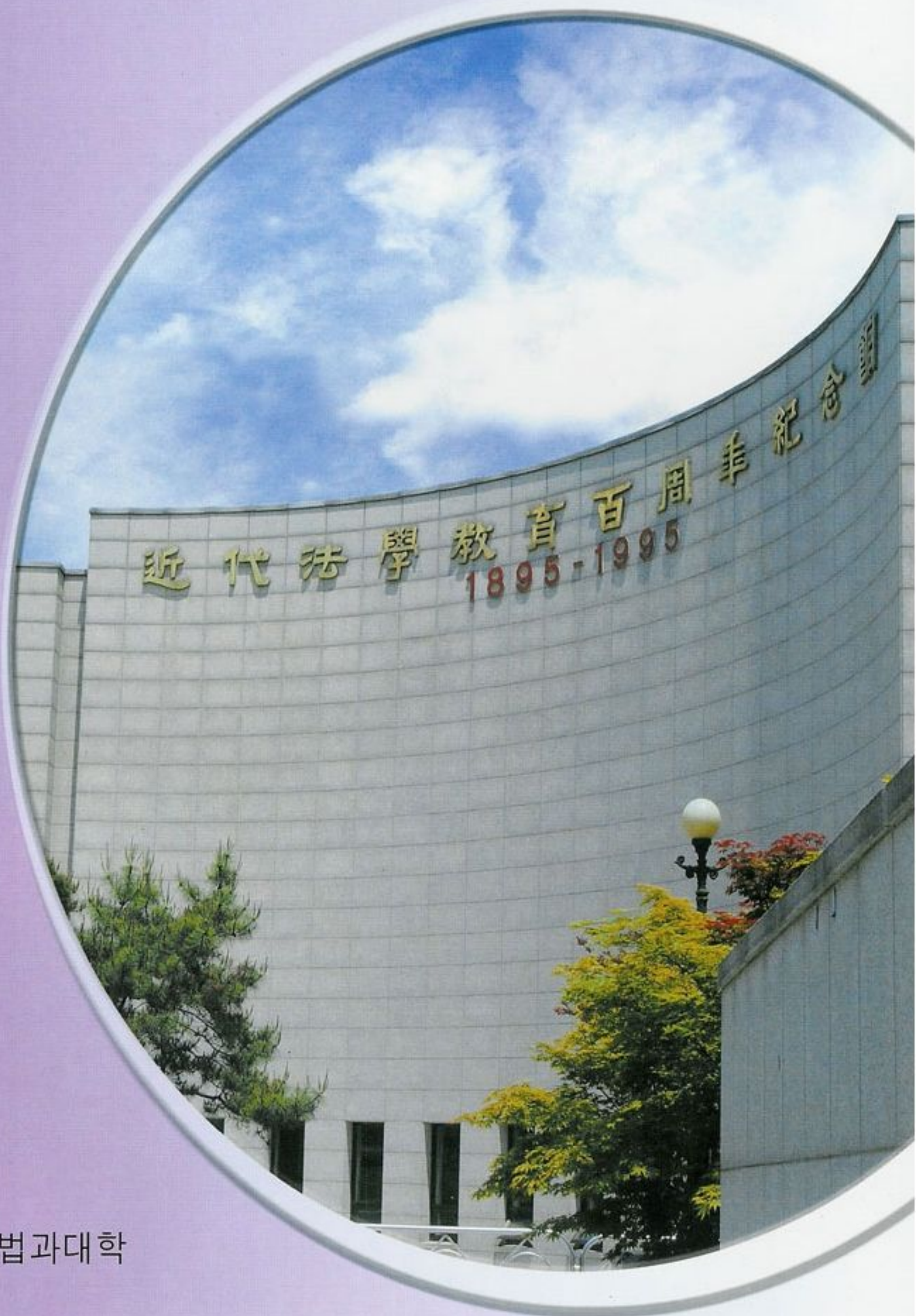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2004

vol.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의의 종

2004. 11

Contents



발간사	2
후원소식	3
■ 15동 201호 - 이철승 동문 ■ 15동 205호 - 박병무 동문 ■ 법학도서관 열람실 개보수 ■ 후원인 명단	
특집 1 - 최고지도자과정 개설	6
■ 최고지도자과정 소개 ■ 정종섭 교수 인터뷰	
특집 2 - 신임교수 소개	10
서울법대 소개	12
■ 신임학장단 소개 ■ 법학도서관 소개	
학술활동	17
■ 학술활동과 국제화 □ 국제학술활동 □ BK21 Foreign Authority Forum □ 외국인교수(visiting scholar) 강의현황, 외국교수 법과대학 방문 □ 외국인 학위취득자, 교환학생, BK21 장기해외연수자 현황 및 보고 □ Alsa, Jessup 소식 ■ 국내학술활동 □ BK21 학술대회 □ 각종 학술대회 □ 교수집담회 ■ '공익과인권' 창간 ■ 서울법대 교수진의 최근 저작물 소개 ■ 법학연구소 소개 ■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동문인터뷰	43
■ 정해창 신임 법대 동창회장	
정의의 종의 유래	47
■ 법과대학 정의의 종의 역사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의 유래	
특별인터뷰	49
■ 전해성 박사 ■ 고흥주 에일 로스쿨 학장	
법과대학생 활동	51
교수동정	53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56

SNU Law Magazine 제3호

발행인 : 성낙인
 편집 : 박정훈, 조국, 송석윤, 이승민
 발행일 : 2004년 11월
 발행처 : 151-74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법과대학
<http://snu.lawlib.org/> (법학당 전자도서관)
<http://us.snu.ac.kr/~lawlib/> 법과대학 뉴스레터



“법과대학을 사랑하시는 동문, 후원자 여러분,”

만산홍엽의 계절이 그 흔적만을 남기고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점을 맞아 ‘정의의 종’ 제3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제1호를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법대 내외의 각종 소식을 전하면서, 법대 동문, 후원자분들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시다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음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발간되는 ‘정의의 종’이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유대를 넓힐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서울대 법과대학의 학술활동 소개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학부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화시대에서도 법학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의 노력을 조금이나마 알리기 위함입니다. 법과 법학에 대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기반과 인식은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추어 가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법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반은 미약합니다. 이에 법과대학을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이 큰 힘이 되는 것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의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법과대학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의 절책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면서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본 책자의 각종 원고를 작성해 주신 분들과 편집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4. 1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성 낙 인 (成 樂 寅)

15동 201호 - 이철승 동문

법과대학 15동 201호의 리모델링 공사가 작년 8월 30일 완료되었다. 201호는 '우원(友垣) 강의실'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는 법과대학의 이철승 동문(78학번) 부친의 호를 딴 것이다. 이철승 동문은 홍우산업, 홍우건설 대표이사를 현재 홍우건설링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승민(volevo@freechal.com)



15동 205호 - 박병무 동문

지난 8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법과대학 15동 205호 앞에서는 박병무 변호사가 기부한 자금으로 리모델링된 205호 강의실의 현판 제막식이 있었다. 205호 강의실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이 현판에는 "이 강의실은 박병무 동문의 후원으로 재단장 되었습니다. 2003.9.1."라고 새겨져 있다. 지난해에 이미 박병무 변호사의 후원으로 내부수리 및 강의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제막식을 하게 된 것이다.

박병무 변호사는 이전부터 동문 후배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2003년 4월 14일에는 근대 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강연을 하기도 했었다.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선배로서, 법대에 입학하여 법조계 이외의 영역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박병무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1980년에 서울대 전제 수석으로 입학하여 1984년 본교 법학 학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과정을 마쳤으며, 이어서 같은 대학교에서 Assistant와 Visiting Scholar로서 연구하기도 했다.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후, 김&장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재정경제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사법연수원 초빙교수로 강의하기도 했다. 2000년부터는 로키스홀딩스 대표이사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3년 6월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의 대표이사사장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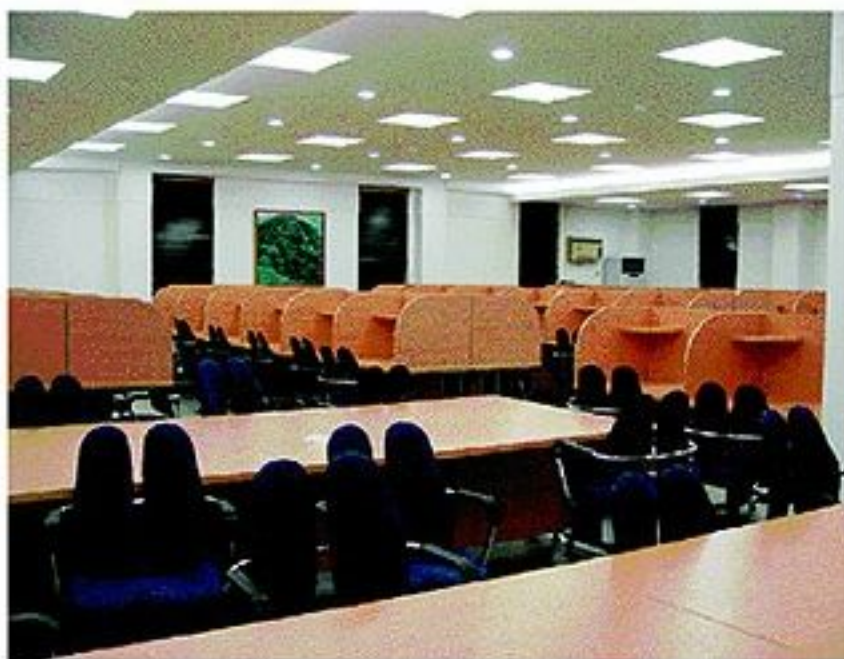
변준석 기자(levinfo@yaho.co.kr)



법학도서관 열람실 개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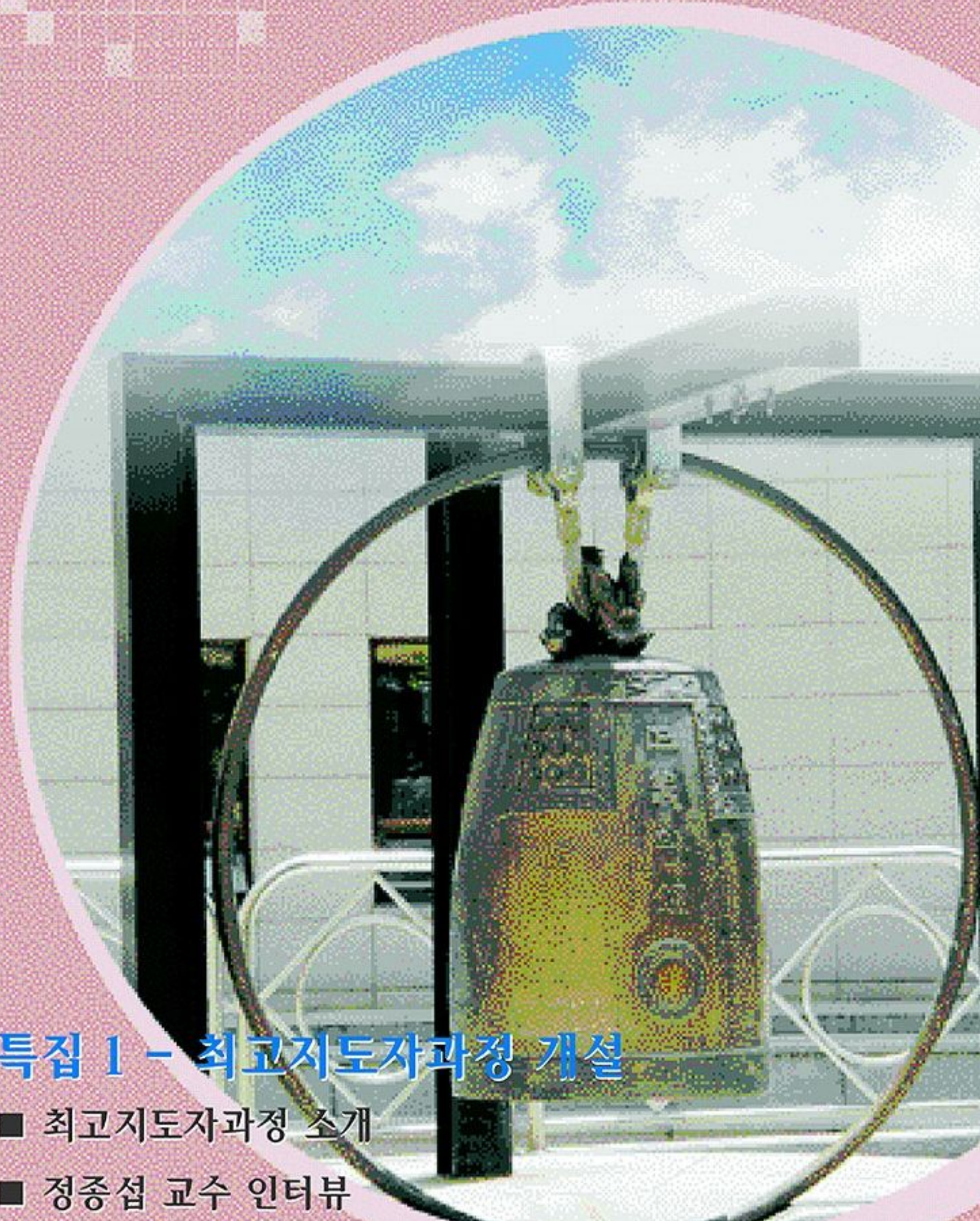
너무 낡은 시설때문에 그동안 이용 학생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던 법학도서관의 열람실이 새롭게 태어났다. 공사는 지난 5월에 시작되었는데, 책상과 의자를 전부 교체한 것은 물론 바닥과 천장도 모두 뜯어내고 새롭게 단장한 대규모 공사였다. 에어컨도 새로 구입했고, CCTV 설치도 이루어져 열람실 도난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최슬기 학생(03학번)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보수 공사 이후 좌석수가 줄어들어 자리 맡기가 더욱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백주년 기념관 주산홀도 지난 8월에 통로 확장 및 의자 제배치 공사를 끝내 좀 더 효율적인 공간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박준엽 기자(dink717@hanmail.net)



후원인 명단

년 월	금 액	후 원 인
2004년 11월	1천만원 미만	서태식, 전효숙, 김용직
2004년 10월	1천만원~1억원 미만	18회동문회(김영무, 이문호, 권문구, 이대공, 이홍길, 김용환, 손진권, 유경희, 박선우, 김영수), 28회 동문회
2004년 9월	1천만원 미만	윤진수
2004년 8월	1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윤세영 이택만
2004년 7월	1억원이상 1천만원 미만	윤세영 한원우, 이택만
2004년 6월	1억원 이상 1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윤세영 정형근, 김&장 법률사무소 이택만, 이희석, 허바드
2004년 5월	1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김우섭, 33회 동문회(강금실, 강신섭, 강희철, 김대식, 김수형, 김양곤, 김정기, 김정태, 김철배, 남효순, 문성우, 문홍수, 박광빈, 박규성, 박기동, 박상렬, 박상옥, 박수만, 박종규, 석광현, 손광수, 신상한, 여상훈, 이경환, 이동명, 이성보, 이의성, 이재범, 정현수, 조배숙, 조희대, 한창희, 황규범), 김영기 이택만
2004년 4월	1억원이상 1천만원 미만	윤종현 박재승, 이경영, 이돈석, 이종훈, 이택만
2004년 3월	1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김건식, 방석호 한국증권거래소, (주)한솔, 대구 도시가스, 이택만, 김&장 법률사무소, 남정호, 강해근,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태평양
2004년 2월	1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10회 동문회 명노연, 정정검, 이택만
2004년 1월	1천만원~1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오윤택 변동걸, 남유선, 이한동, 이택만, 성수제, 윤준원, 신동윤



특집 1 - 최고지도자과정 개설

- 최고지도자과정 소개
- 정종섭 교수 인터뷰

● 최고지도자과정 소개

이번 학기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상 최초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최고전문가 과정이 개설되었다. 정식 명칭은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ALP : Advanced Law Program)으로, 2004년 9월 7일부터 2005년 2월 24일까지 총 68강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본 과정은 법과대학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최고지도자 과정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사회의 지도이념이 반영된 가치체계이며, 사회지도층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라는 점에서 법과대학이 주관하는 과정은 큰 의미가 있다. 하루에 2강좌씩 주2회 진행되며, 매회 각 강좌에 본 대학 교수 한 분과 외부전문가 한 분을 초빙하여 이론과 현실을 결합시켜 실효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의 주제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와 정책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1기 과정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40명의 수강생이 합격하였다. 수강생들은 각 조에 10명씩 4개의 조로 편성되었다. 직역별로 보면 기업 이사, 상무, 부사장 등 재계와 부장판사, 변호사, 변리사, 검사 등 법조계에 종사하는 수강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명의 국회의원과 국방부 법무감리관에 재직중인 장성도 포함되어있다. 이들 수강생에게는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고 서울법대 총동창회 및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동문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법과대학과 부속연구소의 각종 세미나 및 포럼에 우선 참가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생산된 정보도 제공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는데,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의 식사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강의장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이다. 주요 교과과정은 크게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전략,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과 법, 국가 경영과 현대 사법, 한국 경제와 법의 지배 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인 강의 이외에도 야외강좌와 부부특강도 기획되어있다. 1기에는 지난 10월 15일, 16일에 가평 쉼골 골프 클럽에서 미술대학의 김병종 교수를 초빙하여 야외강좌를 진행했고, 강의 이후에는 수강생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26일에는 수강생 부부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 학문과 규장각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규장각을 방문하여 부부특강 시간을 가졌다.





정종섭 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최고지도자과정'을 맡게 된 정종섭 교수는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사람 중에 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철저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법치주의의 인식과 실현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 전반에 걸친 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학의 법적 담론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 리더들에게 올바른 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최고지도자과정이 목표하는 바도 그것에 있다고 하였다.

정교수는 최고지도자과정에서 사회적 경륜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이 각 분야에 걸쳐 갖고 있는 상당한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적을 하고, 규범의 영역에 있는 교수들이 법적 담론을 제시한다면 대단히 생산적인 논의가 탄생되어 과정을 거치는 실무적인 리더들에게 법에 대한 시각의 교정이 이뤄지면 그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과급되는 대단히 큰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규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거대하고 열린 법적 담론구조를 열어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최고지도자과정은 실정법의 존중과 집행만이 아닌, 현실적합성이 높은 법치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교수는 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회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을 대단한 결단이라고 하면서 법과대학 동문회의 확장은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해해야하는 것으로 외국대학에서와 같은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게 할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한승표 기자(lexhahn@yahoo.co.kr)



특집 2 — 산임교수 소개

- 이근관 교수 인터뷰
- 오정후 교수 인터뷰



이근관 교수



이근관 교수는 1986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법학석사를,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해군사관학교, 건국대학교, 일본 九州대학을 거쳐 이번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이근관 교수는 80년대 초 학교에 재학할 당시 한국 사회가 치한 문제들, 특히 남북분단을 비롯한 국제법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로 인해 국제법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외국어와 외국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유학을 하던 중에도 독일, 모스크바, 키예프 등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으며, 특히 미국 사회의 역동성과 에너지, 영국 사회의 전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일의 통일문제와 소련의 분열 문제 등 국가승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한편 유럽중심적 국제법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법의 역사와 근대유럽법의 동아시아에서의 수용사에 대하여도 연구를 진행 중이며, 아울러 국제인권법, 문화재의 국제법적 보호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등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연구의지를 보여주었다. 학생수가 많아서 토론식의 수업이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한 이근관 교수는, 이번 국제법 강의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시사성 있는 국제적인 사건들을 위주로 한 사례연구와 함께 조약문이나 ICJ 판례 원문을 읽는 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기르고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이 치한 현실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변준석 기자(levinfo@yahco.co.kr)



오정후 교수



오정후 교수는 1989년에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96년 본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독일로 건너가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2001년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2003년 3월부터 한림대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번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오니 대학원은 자신이 학교에 다닐 때보다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으나 학부과정은 아직도 학생들과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는 오정후 교수는 학생과 교수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에는 소송에서의 법과 실무와의 괴리, 특별법과 일반법 원칙의 상충 등의 문제에서 소송의 기본원칙의 구현이라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는 강제집행법 연구를, 학부에서는 도산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오정후 교수는 학생들에게 기초가 약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접하게 되면 지엽적인 문제에 파묻혀 법원칙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기술풀적인 부분은 나중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 대학에서는 지엽적인 것에만 얽매이지 말고 기본개념을 충실히 배우고 각 과목마다 기초를 튼튼히 쌓을 것을 당부했다.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한승표 기자(lexhahn@yahco.co.kr)



신임학장단 소개

성낙인 학장 인터뷰



2004년 6월 법과대학 학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성낙인 교수는 학장직 외에 발전재단 이사를 겸하고 있다. 학자로서의 역할 외에 행정적인 학장직을 맡게 됨으로써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낙인 교수는 바람직한 학장상에 대해 교수들에게는 편안하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이를 위해 행정직원들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학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외에 지성으로 대표되는 대학에서부터 화합과 통합의 과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서울법대가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학장으로 있는 2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폐교론에 대하여 이는 걱정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수혜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서울법대인들이 한국사회가 부여한 혜택에 걸맞은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에 나온 문제이며,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성의 일환으로 안경환 전임 학장 때부터 계획되어 준비되어 온 것이 최고법률가 과정의 개설이며, 기존에 서울법대인들만의 성체를 쌓아 왔던 것을 이제 사

회와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법대가 사회 인사들과 학생들간의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서울법대 학생들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탄생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미 2008년 확정 운용하는 로스쿨 도입에 대하여는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정 인원에 대해 서울대에 입학한 정도의 엘리트들은 거의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해시켜 통합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김지연 기자(thita@hanmail.net),

변준석 기자(levinfx@yahoo.co.kr)

박정훈 교무부학장 인터뷰



지난 6월 신임 교무부학장으로 취임한 박정훈 교수(행정법)는 소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하나는 유럽의 관점에서 바라 본 부학장의 역할, 즉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불침번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배와 동료 교수들의 연구를 위해 최대한 봉사한 후, 임기를 마치면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에 전념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 3개월 동안 학장님과 직원들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직원들 모두 좋은 분들이고 잘 따라주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고충 없이 부학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교수의 대내외적 지위를 높이고, 연구지원과 도서관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또, 교무부학장으로서의 중간고리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학장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보좌하고, 전임 학장단의 수고와 노력으로 설립된 법학발전재단을 졸업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법학발전재단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립대학교로서의 서울대학의 특성상 기부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로서 교육의 공공성, 즉, 교수의 연

구와 교육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로부터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빈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학문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사법시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운영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법학방법론의 핵심으로 다음의 네 가지, 즉 해석, 프로세스, 대립하는 이익과 가치의 존제를 아는 것, 그리고 이유의 제시(justification)를 지적하였다.

박 신임부학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며, 국가의 장래를 담당하는 공부의 대표선수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사명의식을 가져주었으면 한다는 점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박희원 기자(freetodream@hanmail.net),

변준석 기자(levinfox@yahoo.co.kr)

조국 학생부학장 인터뷰



신임 학생부학장 조국 교수는 젊은 교수로서 연구와 강학이 중심인데 아직 행정보직이 생소하고 부학장 맡을 때는 아니지 않은가 싶지만, 학장님께서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연구와 강학에 무여할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교수로서 요즘의 법과대학 학생은 무슨 고민이나 희망, 향후생활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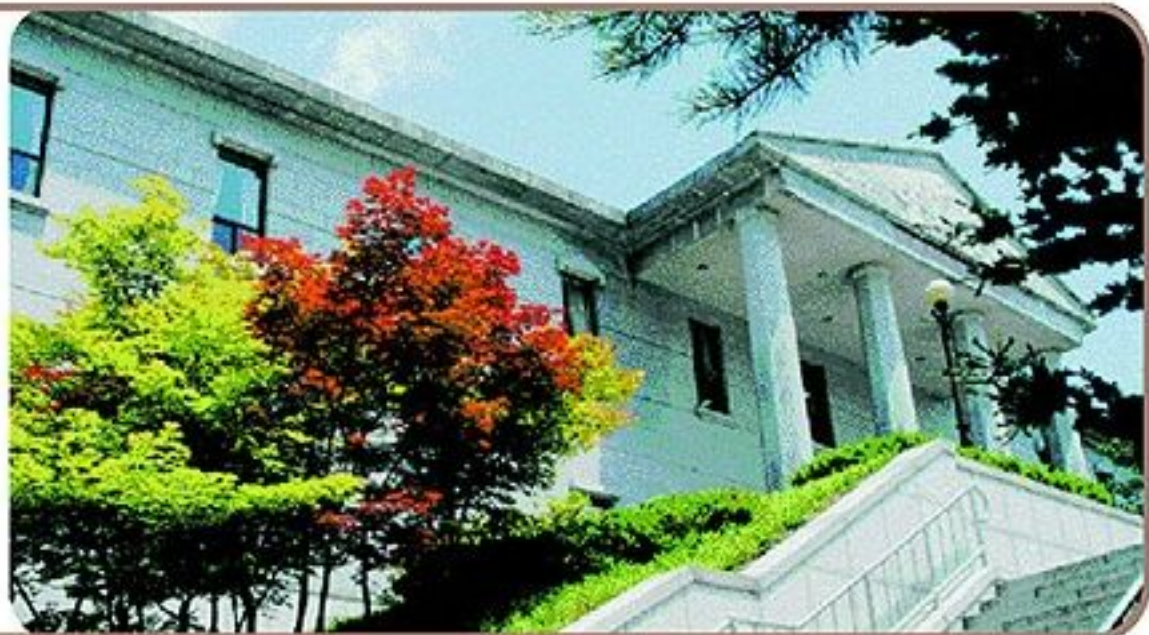
조국 교수는 학생부학장의 역할을 학생들이 학교에 접속하는 기본적인 동력으로 본다면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후원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학생들과의 많은 상담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국 교수는 법과대학의 학생 중에 특별히 학과 공부나 동아리 활동, 학생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생활의 방향타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더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장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하는 고민부터 고시생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고민, 로스쿨 도입이나 진로 선택에 관한 고민까지 조국 교수는 깊은 관심

을 보였고 그에 대해 학생부학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구상 중에 있다고 하였다.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조국 교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법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이러한 법을 폐지하자” “이러이러한 법을 고치자” 등의 법정책론적인 생각은 물론 현재 존재하는 법질서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법해석론적인 능력 역시 갖추어야한다고 하였다. 법대생으로서, 법전문가로서 비판적인 사회의식과 법해석능력 양자를 놓치지 말 것을 조국 교수는 강조하였다.

한승표 기자(lexhahn@yahoo.co.kr),
박준엽 기자(dink717@hanmail.net)

● 법학도서관소개

국산 법학도서관



현재의 법학도서관은 故 김택수 동문(법대6회)의 사재 5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건립된 기념도서관으로서 그의 아호를 따서 菊山法學圖書館으로 부른다. 1982년 10월에 기공하고 1983년 12월 3일 준공하여 개관한 국산법학도서관은 38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세워진 석조 건물로, 1층에 연속간행물실 및 총294석의 열람실이, 2층에 제 1, 2서고 및 기념문고 및 단행본서고 등이 있다.

법학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해 오면서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약 79,000여권의 도서와 578종의 국내외 학술지를 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비치된 법률학 관계 일반도서는 관외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모든 서울대학교 학생과 교수, 직원 및 외부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대학에서 발급한 신분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열람실의 개관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정기간행물실과 서고 및 기념문고실은 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법학도서관에서는 해방 후 현재까지의 법학문헌을 총 정리한 <법률문헌색인 I>(1945~1974), <법률문헌색인 II>(1975~1985), <법률문헌색인 III>(1986~1992), <법률문헌색인 IV>(1993~1995), <법률문헌색인 V>(1996~1998)을 발행하여 서울대학교 출판부를 통하여 발간하여 법학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장 남효순 교수 인터뷰



신임 법학도서관장 남효순 교수는 현재 법학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로 장서부족을 지적했다. 현재 8만 8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학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매년 1천여 권의 장서밖에 추가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서적 보유현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 남 교수는 장차 도입될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학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장서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자금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국가나 기성회비 지원 외에 새로운 재원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학도서관의 열람실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장차 로스쿨에 대비한 법학도서관의 증, 개축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남 교수는 법학도서관장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들의 연구 및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남 교수는 비록 현재 법학도서관의 수준이 일반 도서관인 프랑스의 '미테랑 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la France)'의 법학 전문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외국의 유명 법학도서관들과는 비교조차 힘든 열악한 상태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보된 재원 내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학생들도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엽 기자(dink717@hanmail.net),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학술활동과 국제화

국제학술활동

—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버클리대 공동주최 2004 하와이 워크숍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와 버클리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4 하와이 워크숍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되었다. 법과대학에서는 구대환 교수와, 현기담 영문저널 조교가 참석하였다. 이 기간에 하와이 법과대학의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하와이주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HSBA-IP) 회원들과 토론 및 만찬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의 비교연구에 관한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과 영문저널의 원고수집도 함께 이루어졌다.



- 서울법대, 프라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움 -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 법대간의 공동심포지엄이 독일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는 법과대학의 호문혁, 최종고, 성낙인, 권오승, 양창수, 이용식, 조홍식, 박상근 교수와, 한동훈, 김수용, 이유봉, 박성온, 곽희경, 박나래 조교가 참석하였으며, 독일 법학계의 연구동태를 파악하고, 독일의 법제도와 법학교육을 체험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성낙인 학장의 학술대회 보고이다.

〈한독법학학술대회 보고 -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매 2년마다 서울과 프라이부르크에서 상호 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년 전인 2002년 가을에는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학장 및 교수들이 서울법대를 방문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서울법대 학장을 포함한 교수 8인과 5인의 조교가 프라이부르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였는데,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과 독일에서의 법개혁 비교”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7월 17일에는 프라이부르크대 법대 우베 블라우락 학장과 서울법대 성낙인 학장의 개회사에 이어, 블라우락 학장과 권오송 교수가 카르텔법에 관해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권터 하거 교수와 양창수 교수가 민법 및 채권법 개정에 관해서, 디터 라이폴드 교수와 호문혁 교수가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해서, 요아힘 스톨테르포스 교수와 박상근 교수가 회사법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7월 18일에는 디트리히 푸르스비 교수와 조홍식 교수

가 환경법에 관해서, 토마스 뷔르텐베르크 교수와 최종교 교수가 각기 법질서 변화와 남북한 법을, 안드레아스 브스쿨레 교수(차기 학장 내정자)와 성낙인 교수가 헌법 재판에 관해서, 발터 페론 교수와 이용식 교수가 형사법(가정폭력)에 관해서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는 양국 간 법학의 쟁점사안을 법학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발표하고 토론한 소중한 자리였다.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독일에서도 전통적인 평등대학교육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대학 중에서 전국적으로 10개 중점대학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독일 각 대학의 노력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대학사회도 어쩔 수 없이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다.



※ 이 글은 법과대학 홈페이지(law.snu.ac.kr) 9월 2일자 공지사항에 게재된 글, 법과대학 뉴스레터 홈페이지(jus.snu.ac.kr/~lawletter) 11월 22일자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 법과대학 BK21 법과경제연구센터, 중국 상해 華東政法大學 공동학술대회 —

지난 10월 29일~31일, 중국 상해 華東政法大學에서 “한국의 법제운용 경험이 중국에 주는 의미”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법과경제연구센터와 상해 화동법정대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쟁법(권오승 교수)’, ‘Criminalization of Netizens for Their Access to On-line Music(정상조 교수)’, ‘소득개념의 형성사(이창희 교수)’, ‘法政策學의 하나의 構想(조홍식 교수)’, ‘한국 어음법의 중요 판례 개관(송옥렬 교수)’, ‘영업방법발명 보호의 분제점에 대한 경제적 검토(구대환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대회는 중국에 한국법의 발전상을 알릴으로써 중국법의 발전과 한국법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양국 간 법학 교류의 장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대회였다.



—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학술대회 :
‘定住外國人の 地方參政權 實現을 위한
日・韓・在日 네트워크’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定住外國人の 地方參政權 實現을 위한 日・韓・在日 네트워크”가 11월 24일 개최되었다. 金東勳 서울대 법대 방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金敬得 일본 변호사가 ‘在日同胞에게 國籍과 地方參政權’란 주제로, 近藤敦(九州産業大) 교수가 ‘永住市民權과 地域的 市民權: 外國人 地方參政權의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鄭映惠(大妻女子大) 교수와 田中宏(龍谷大)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제2부에서는 법과대학의 정인섭 교수가 ‘한국에서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아주대학교의 오동석 교수의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의 헌법적 검토’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은 정정훈 변호사와, 담도경(漢城華僑學校) 교사가 맡았다.

70년대부터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예가 늘고 있고, 일본에서도 80년대 후반부터 재일한국인과 같은 정주의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발표회는 시사하는 바가 큰 대회였다.





BK21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사업단에서는 수시로 외국
의 저명 학자와 교수들을 초빙하여 Foreign Authority
Forum을 열고 있으며, 이는 학문에 있어 국제적 교류의
장을 넓힘과 동시에 세계적 안목을 기르는 데 크게 이
바지하고 있다. 아래는 2004년 3월부터 11월까지 열린
Foreign Authority Forum의 목록이다.



◆ Foreign Authority Forum

회차	주제	초청강사	일시
69	미국 로스쿨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Michael Young(George Washington 법대 학장)	3/22
70	일본의 로스쿨(법과대학원)제도	Mitui Makoto(고베대학 교수)	3/24
71	Apartment Ownership	Cornelius van der Merwe(Aberdeen대학 교수)	4/1
72	행정사건과 일본의 최고재판소	Fujita Tokiyasu(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4/29
73	일본 행정법학의 전개에 관한 모색	Shiono Hiroshi(동경대학 명예교수)	5/3
74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로의 한일관계 -역사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Sasagawa Norikatsu(국제기독교대학 교양학부 교수)	5/3
75	일본 교육법제의 현황	Ichikawa Sumiko(일본 독립대학 교수)	5/11
76	미국 민사재판에서의 배심제도	Stephen Bundy (U.C Berkley)	5/25
77	일본의 유사법제, 재부장과 평화헌법의 변화 전망	Mizushima Asaho(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6/8
78	일본 사법제도: 한국 사법제도와 비교	나가사와 유키오 (동경대학의 특임교수 겸 변호사)	9/1
79	Contributions of Korea Lawyers to the Globalization Age	혜성 전-코 (Hesung Chun-Koh, 미국 예일대 동양연구소장)(Director, East-Rock Institute,Yale)	9/17
80	태국에 있어서 경쟁법의 현황과 전망	Sakada Thanitcul(Associate Professor of Law, Faculty of Law,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Thailand)(Commissioner, The Thai Business Competition Committee)	10/8
81	Experience in building a "new law school " and its problems	Hisaei Ito(일본 중앙대 law school 교수)	11/1

외국인교수(visiting scholar) 강의현황, 외국교수 법과대학 방문

현재 법과대학에는 세 명의 visiting scholar가 초빙되어, 외국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법·민사소송법 전공인 Peter Gilles교수(독일, Frankfurt대학 학장 역임)와 국제법 전공인 Grace M. Kang교수(미국), 李居迁(Li Juqian)교수(중국)가 그들이다.

우선, Peter Gilles교수는 학부에서 독일법강독 강의와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특수연구(소송행위론 연구)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법강독은 28명이 수강중이고, 민사소송법특수연구는 5명이 수강하고 있다. 독일법강독에서는 독일의 헌법, 변호사제도, 법학교육제도 등을 비롯하여 유럽비교법, 독일법이 우리법체계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민사소송법특수연구과목에서는 국내적인 관점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Grace M. Kang교수는 학부의 영미법강독 과목, 대학원의 국가안전보장제도 연구를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부의 영미법 강독 과목에는 77명이나 되는 학생이 등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제도 과목은 4명이 수강중이다. 이 과목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인권 등 현재의 이슈들과 관련하여 유엔과 국제법체계를 중심으로 국제안전보장을 살펴보고 있다.



李居迁(Li Juqian)교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중국법제사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비교경제법연구(중국경제법연구)를 강의하고 있다. 비교경제법연구 과목에는 8명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의 중국법제사 과목은 4명이 수강하고 있다. 중국법제사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이윤석(법학 4) 학생은 제목과 달리 법제사 뿐 아니라 현대법에도 중점을 두면서 중국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커버하여,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에 잘 부합하는 강좌라고 말했다.



법과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한국법의 인식 대상을 넓히고,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준석 기자(levinfx@yahoo.co.kr)

일본 龍谷大學 명예교수인 김동훈 서울법대 방문교수는 지난 4월 20일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집담회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조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11월 24일에는 역시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定住外國人の 地方參政權 實現을 위한 日・韓・在日 네트워크”에 관한 학술대회의 전체 사회를 맡아 진행을 담당하였다.

20년간 관사로 제직한 후 물러나 동경대의 특임교수 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Nagasawa Yukio 교수는 8월 말에 한국을 방문하여 9월 말에 귀국할 때 까지 9월 1일에 Foreign Authority Forum에서 강연했고 9일에는 학부의 저작권법 강의에서 강연했으며, 15일에는 대학원 부정경쟁방지법 강의에서 강연했고, 20일에는 기술과 법 센터에서 ‘일본에서의 지적재산권 실무IP Practice in Japan’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가졌다.

중국 浙江大 하립안(夏立安) 교수가 이번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우리 학교에서 연구를 한다. 하 교수는 법철학과 법사회학이 전공이며, 최종고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이번에 SK에서 출연한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초청을 받아 1년간 법과대학에 머물게 됐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아시아권의 학자들을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초청하여 체제비를 부담해 주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U.C. Berkeley) Law school의 로렌트 마알리(Laurent Mayali) 교수가 본교 조홍식 교수의 초청으로 본 대학을 방문하였다. 마알리 교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몽펠리에 대학에서 박사학위와 법제사(Legal History)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the Max Planck Institute for European Legal History)를 거쳐, 1985년부터 U. C. Berkeley에서 비교법(comparative Law)과 법제사(Legal History)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고, 프랑스 국립사회과학원에도 출강하고 있다.

마알리 교수는 본교를 방문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정당성과 합법성 그리고 법의 지배(Legitimacy, Legality and The Rule of Law in Democratic Societies)”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본 강연은 프랑스와 미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비교법적으로 또한 법제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우리의 현실과 관련하여 사법제도를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설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변준석 기자(levinfo@yahoo.co.kr),
박희원 기자(freetodream@hanmail.net)

허바드 주한미대사 초청강연

지난 6월 1일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가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법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약 1시간 20분 동안 강연을 가졌다.

“한·미 관계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허바드 대사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미 양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바드 대사는 “처음으로 서울대 에서 강연하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인권 등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이어져온 동맹을 미래에도 공고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들은 한·미 관계 외에 미국의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으며, 허바드 대사는 이 같은 교수들의 질문에 대해 이라크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매우 수치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그리고 신의철 법대 학생회장의 이라크전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



쟁은 공산정권 대 민주정권의 선명한 대결 구도를 나타낸 베트남전과 다른 점이 많다.”며 “결국은 수십 년 간 독재지하에서 신음한 이라크에 자유와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학위취득자, 교환학생, BK21 장기해외연수자현황 및 보고

2004년 한 해 동안 법대에서 외국인으로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박사 1명, 석사 2명, 학사 1명이다. 김하복씨는 2월 26일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논문의 주제는 ‘經濟行政의 構造와 法的 統制에 관한 研究 : 韓·中 兩國의 比較를 中心으로’이다. 이에령씨

와 김설배씨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논문의 주제는 각각 ‘在中탈북자의 國際法的 地位와 그 問題解決에 관한 研究’, ‘한국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권리 및 그 보장에 관한 연구’이다. 유위위씨는 8월 30일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타교에서 본교로 온 교환학생은 모두 4명으로 미즈시마 레오(Mizushima Reo, 일본)씨와 강현우씨(뉴질랜드)는 1년, 성미원씨(대만)와 심명희(독일)씨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예정이다. 본교에서 타교로 간 교환학생은 모두 3명으로, 한대웅씨가 교토대학에서 수학한 후 지난 8월 귀국하였고, 송지연씨와 이정후씨는 현재 도쿄대학과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각각 공부하고 있다.



◆ 장기해외연수 선발 현황(2003년 2학기, 2004년 1학기)

성명	대상국	연 수 기 관	연 수 목 적	연 수 기 간
남하균	독일	괴팅엔 법과대학	행정작용형식 연구-추상적 법규범과 구체적 국가활동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2003.2.-2004.1.
최준혁	독일	Freiburg법과대학	고의와 착오-규범적구성요건요소를 중심으로-	2003.7.-2004.6.
홍소연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확보방안	2003.8.-2004.7.
정민정	미국	미국 비클리대학교	영토분쟁(독도영유권분쟁)	2004.1.-2004.12
박세민	독일	독일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부당이득법상의 삼각관계 연구	2004.2.-2005.1.
최은창	영국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enter for Socio-Legal Studies	An Overture of New Global Webcasting Treaty By WIPO	2004.9.-2005.8.

■ 장기연수 보고(이하의 보고서는 법과대학 BK21 뉴스레터에 게재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독일 함부르크대학 장기연수를 마치고 - 김태호(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필자는 BK21의 재정지원으로 독일 함부르크대학 법과대학 소재 공법연구소 및 환경법연구소(소장: Hans-Joachim Koch 교수)에서 장기연수를 하였다. 2003년 1월에 출국하여 두 달 동안 구동독도시 드레스덴에서 어학연수를 한 다음, 함부르크에서 1년을 체류하였다. 함부르크의 대학을 선택하였던 것은 전공분야에서 풍부한 강좌와 교수진을 갖춘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첫 학기에는 학부 고학년 강좌를, 두 번째 학기에는 대학원 세미나를 중심으로 강좌에 참석하였다. 대학원 블록 세미나로 인상 깊었던 것으로는 △방 경제가 유럽화되는 과정에서의 민영화 문제(Kueling) △ 도로교통에서의 환경법적 쟁점(Koch) △ 경찰법의 새로운 쟁점(Felix) 이 있었다. 필자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는 “전문계획에서 환경이익의 고려”였다.

참석한 학술대회 중에 특히 규모가 크고 인상깊었던 두 학술대회로 역시 독일 국립학자대회(2003. 10. 1-4, 함부르크)와 별지 않은 스웨덴 룬트에서 열린 세계법철학자대회(2003. 8. 12-18)를 꼽을 수 있다. 세계법철학자대회의 중심주제는 “법과 정치”였지만 매우 다채로운 포럼이 개최되었다. 알렉시, 포스너, 코트렐과 같은 국제적인 학자들의 발표내용과 열띤 토론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진지함에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본교에서 참가한 최종고, 박은정교수의 주제발표로부터도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독일공법학회지(VVDStRL)에서 발표문을 확인할 수 있는 독일국립학자대회에 참석한 것은 행운이었다. 2003년 대회의 주제로 헌법에서는 △국기법이론과 그 대상의 변경 : 유럽화와 국제화의 결과 △다양한 국가 및 헌법의 이해에서 비추어 본 자유와 안전의 보장 문제가,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을 통한 위협의 조율 : 혁신의 가능요소인가, 제한요소인가 △ 정보행정법의 윤곽들이 거론되었다.

외국법을 ‘외국’ 법으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좀더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 보려 한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독일법은 ‘외국’ 법이라는 평범한 사실확인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미국 듀크대학 장기연수를 마치고 - 홍소연(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난 2003년 8월 2일자로 필자는 BK21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Duke University 법대에서 연수생활을 시작하였다. 우선, 주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연구를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하여 여러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교환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 필자의 논문주제에 관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연구생활이 한층 풍요로웠다.

여러 특강이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도 그 중 인상에 많이 남는 것은, Duke대 내에 있는 Women's center에서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포럼에 참여한 일이었다. 필자가 참여했던 포럼의 주제는 ‘여성차별과 정체성의 문제’였는데, 법대가 주최하는 것과 달리 규모도 작고 참여하는 층도 다양하였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또한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 장려되고 모든 이에게 정보와 교육의 장으로서 심분 발휘되고 있었다.

Duke법대 교수인 Madeline Morris, Trina Jones와도 꾸준히 면담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용한 문헌도 많이 추천받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방문 자격으로 Duke법대에 방문학자 자격으로 온 호주대학의 Rita Shackel 교수의 경우 국제아동권리협약(ICRC)에 관한 연구를 하던 차에 필자와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어 서로 공동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주 토론을 거쳤는데, 이는 필자의 논문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미팅들이었다.

Duke대에 없는 문서들은 수시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알아봐주어서 연구흐름이 깨지지 않고 자료수집이 대체로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법대 내 International coordinator의 도움으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많은 연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필자는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 연수를 한 것이 아니라
서 법대에서의 수업은 칭강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 중
'법과 인종' 그리고 '국제인권법' 수업에 참여하였다.

Alsa, Jessup 소식

ALSA(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SNU는 2003
년 5월 제1회 Debate Competition을 개최하였고 2003년 6
월에는 부산대 주최 국내 Study Trip에 참가하였다.
2003년 8월에는 일본 교토에서 Study Trip to Japan을
가졌고 2003년 10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5회
ASEAN Law Students' Conference에 참가하였다. 2004
년 5월에는 영상학술제를 개최하는 한편 2004년 7월에는
서울 Study Trip과 몽고 Study Trip을 가졌으며 2005년
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Study Trip에 참가할 예정이
다. ALSA는 한국 내 가입 대학교 8개 학교 외에도 아
시아 10개국의 법학생들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가입 및 상세정보는 www.alsa.or.kr 참조



2004년 4월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45회
세계 국제법 모의재판 경시대회(Philip C. Jessup Inter-
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에서 서울대학교
제섭(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팀 10기(한민오(3년), 하
정훈(3년), 유병국(2년), 석승욱(2년))가 세계 21위의 성
적을 거두었다. 이번 성적은 20위를 한 작년과 비슷하나

올해에는 참가교가 더 많았고 새로 생긴 상위권 경시대
회인 21강전에 진출하였으므로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
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의 사안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팀원들은 스스로 모여 판례 및 자료를
수집하고 세미나를 열어 변론서를 작성하는 등 1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준비해왔다. 서울대학교 제섭팀은 국제대
회에 참가하기에 앞서 2004년 2월 국내 경시대회에서 우
승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
팀 11기는 2005년에 있을 국내 경시대회와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승표 기자(lexhahn@yahoo.co.kr)

● 국내학술활동

BK21 학술대회

— 법제도비교연구센터, “법이론과 법체계의
과거, 현재, 미래” —

지난 2월 25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법제도비
교연구팀에서는 “법이론과 법체계의 과거, 현재, 미래”라
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
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법과대학의 양창수 교수의 사회
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법과대학의 박상근 교수가
'변호사법개정법률안 중 공동법률사무소제도개선안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성낙인 교수가 '한국헌법사에 있어
서 공화국의 순차'라는 주제로, 최병조 교수가 '民法(財
産編) 改正案의 착오조항에 대한 比較法-論想論的 검
토 - 독일에서의 입법과정을 참작하여'라는 주제로, 호
문혁 교수가 '독일민사소송법의 계수 120년의 史的 高
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은 법과대학의 송
석운 교수, 송옥렬 교수, 최봉경 교수가 맡았다.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이중국적-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28일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는 “이중국적-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집담회가 있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중국적 : 어떻게 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철우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 이중국적과 시민권의 정치사회학’라는 주제로, 김영석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국제법상의 이중국적의 취급’이라는 주제로,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중국적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법무부의 석동현 법무과장이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변준석 기자(levinfox@yahoo.co.kr)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

지난 6월 29일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가 주최하고,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가 주관한 이 학회는 마이크로소프트(주)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이날 제1부 발표는 법과대학의 박은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법과대학 송석운 교수(‘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방승대 김엘림 교수(‘혼인 차별과 법의 지배’)의 발표가 있었고, 부산대 법대 이승욱 교수와 법과대학 이우영 교수의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양현아 교수가 ‘한국사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법의 처우’라는 주제로, 동아대 박경숙 교수가 ‘연령주의 사회와 법’이란 주제로, BK21 법학연구단 최정학 연구원이 ‘전과로 인한 차별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후 조이여울, 건국대 법대 조용탄 교수, 법과대학 조국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3부는 성균관대 법대 이철우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어, 법과대학 정인섭 교수(‘화교에 대한 차별 : 그들은 한국사회의 주권인가?’), 박종운 변호사(‘장애인 차별과 법의 지배’)의 발표 후 우심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나경원 국회의원의 토론이 있었다.

박준엽 기자(dink717@hanmail.net)



— 법제도비교연구센터, “비교법과 법학연구” —

지난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비교법과 법학 연구(1)”라는 주제로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다. 양창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는 박정훈 교수(‘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최병조 교수(‘로마법과 비교법’), 김도균 교수(‘비교법과 법철학’)의 발표가 있었으며, 홍익대 오세혁 교수와 법과대학의 최봉경 교수, 한양대 임비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민(vdevo@freechal.com)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고 최종길 교수
31주기 기념강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고 최종길 교수 31주기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100주년 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인권의 현실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박희원 기자(freetodream@hanmail.net)

— 공익인권법연구센터,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

2004년 11월 3일에는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교수 기념홀에서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낙태의 현실,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서는 ‘미혼여성의 낙태 현황(이숙경/여성학자, 방송인)’, ‘한국의 모자보건정책과 여성의 재생산권(조영미/동국대 강사)’ 등이, 2부 “낙태와 재생산권을 보는 법의 시각”에서는 ‘형법상 낙태죄의 성평화성(이인영/한림대)’,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본 낙태와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최희경/이화여대)’, ‘낙태권을 넘어서: 여성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양현아/서울대)’ 등이 발표되었다.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각종 학술대회

— 백충현 교수 정년맞이 기념강연 —

지난 9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대강당(주산기념홀)에서 '영토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백충현 교수 정년맞이 기념강연이 있었다.



백충현 교수는 지난 36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올해 8월 31일자로 정년을 맞이하였다. 백충현 교수는 1961년 본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5년에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LL.M.과정을 거쳐 다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1979년에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방문한 바 있으며, 1985년에는 동경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다녀왔다.

백충현 교수의 저서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상황에 대한 UN 보고서(UN Report, Final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와 『구한말 국제관계 사료집』, 『독도의 영유권 - 현지답사보고』, 『한



국-프랑스간 귀중도서 교환협정(안)에 대한 분석의견, 「외규장각 도서 무엇이 문제인가?」외 다수가 있으며, 논문으로 「I.L.O. 가입에 따른 법률상의 제문제」, 「남북 접촉에 따른 법률상의 제문제」, 「백두산 "천지양분설"의 국제법적 평가」, 「독도-죽도에 대한 영유권 논의」,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한국측 현황 한일관계 국제법 문제」, 「한국의 국제법실행」외 다수가 있다.

변준석 기자levinfx@yahoo.co.kr

— 석암 배재식 박사 5주기 추모 학술대회 —

2004년 10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법과대학 근대 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에서 석암 배재식 박사께서 갑작스럽게 타계하신지 만 5년째를 맞아 석암 선생의 생



애와 학술세계를 조명하는 추모학술대회를 가졌다. 서울대 백충현 명예교수가 석암선생의 생애를 소개하고, 서울법대 정인섭 교수와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가 각각 한일관계 및 국제인권분야와 남북한 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석암 선생의 학문세계에 대해서 발표했다.

변준석 기자(levinfx@yahoo.co.kr)

— 서울대 통일포럼 주최 제11회 통일논단 —

지난 3월 31일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는 “통일 헌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대 통일포럼 주최 제11회 통일논단이 개최되었다. 법과대학 최종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논단에서는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가 “통일헌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법무부 이효원 검사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이후 법과대학 조홍석 교수와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성낙인 교수는 발표에서 남한과 북한의 상이한 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통일 헌법은 입헌주의의 정립을 위한 권력구조를 갖춰야 하고,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장전으로서의 헌법임과 동시에 정치제도의 설계로서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통일헌법의 국가형태, 조직원리 등을 논의하였고, 이에 관한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각각 검토하였으며, 통일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정부형태의 구현형태를 살핀 후 연성적 권력분립과 경성적 권력분립을 조화시킨 이원정부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정치제도에 관해서는 양원제가 적절하며, 다만 평등양원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원과 상원의 구체적 선거제도 등을 논하였다. 사법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 일원주의를 도입하되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치권력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외에 연방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효원 검사의 발표에서는 남북한간 합의분권 체결 현황과 남북한 특수관계이론의 내용 및 헌법적 근거와 외

국의 사례를 검토한 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조약성 인정 여부,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문제,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등을 검토하였다.

이승민(volevo@freexchal.com)

- 서울대 통일포럼 주최 제13회 통일논단 -

지난 10월 22일 금요일, 법과대학 6층 서암홀에서는 '북한의 법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법과대학의 조홍식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포럼에서는 최종고



교수가 제1주제로 '북한의 법:역사와 체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한인섭 교수가 제2주제로 '북한에서의 법과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제3주제로 '북한의 현실과 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최종고 교수는 발표에서 남북한법의 역사적 형성을 살피고, 북한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북한법의 전망과 동일을 향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인섭 교수는 북한형법상의 '반국가범죄'를 우리 형법 및 국가보안법과 비교하였는데,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형사제제형태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우리 법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북한만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및 형법을 한 차원 위로 고양시킬 것을 주

장하였다. 윤대규 부소장은 사회주의법이자 주체사상의 실현도구로서의 북한법을 분석하였고, 북한과 같은 카리스마적 사회에서 법이 이차적 규범으로, 체제보장도구로, 그리고 장식적 규범으로 전락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제발표에 대해서 각각 논평이 이루어졌는데, 제1주제에 대해서는 북한법연구회장인 장명봉 국민대 교수가 논평을 하였고, 제2주제에 대해서는 법과대학의 김도균 교수가, 제3주제에 대해서는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장이 논평을 하였다.

변준석 기자(levinfox@yahoo.co.kr)

-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영산대학교 공동학술대회 -

지난 10월 30일 토요일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는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와 영산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법과대학의 장승화 교수(법의지배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부구옥 영산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최병조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제1부에서는 법과대학의 호문혁 교수의 사회로, 홍상식 부산가정지원장('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 김동호 영산대학교 교수('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방식')의 발





표에 이어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김원찬 교육부 학술연구진흥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제2부는 이승섭 영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법과대학의 남효순 교수(‘프랑스의 사법시험’), 방승주 영산대학교 교수(‘독일의 사법시험’), 법과대학의 이근관 교수(‘영국의 사법시험’), 이우영 교수(‘미국의 사법시험’), 부산대학교 김창목 교수(‘일본의 사법시험’)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있었으며, 호문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후 최병조 교수의 폐회사로 대회의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관한 그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발전적인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지연 기자(thita@hanmail.net)

-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춘계, 추계 학술활동 -

서울대노동법연구회(회장 김유성 교수)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4월에는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공개 학술토론회가 “단결권의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유성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토론회에서는 한신대 최영호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실업

자와 단결권”에 대한 한양대 강성태 교수의 발표와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제2주제에 대해서는 역시 최영호 교수의 사회로 송강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단결강제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유성재 중앙대 교수와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10월 22일에는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정기정책토론회가 “노동분쟁처리제도의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화여대 이철수 교수(‘노동분쟁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충남대 김홍영 교수(‘노동위원회제도의 성과 및 한계와 향후 개선방향’), 김선수 변호사(‘권리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의 발표가 있었다.

- 기타 학술활동 -

법대에서는 이외에도 많은 학술관련 행사가 개최되었다. 3월에는 법학연구소 헌정사연구회 주최 법사학회 학술대회가 열렸고, 4월에는 BK21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집담회(“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조치”)가, 5월에는 법과사회이론학회 심포지엄, 한국경쟁법학회 세미나, 김수형 교수 강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대한국제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국제법 집담회 등이 있었다.

6월에는 장명봉 교수(국민대)의 학술발표(“6·3사태와 서울법대의 수난”)를 비롯하여, 아시아법연구소 개소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아시아법 연구의 현황과 전망”) 등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정기세미나(“주40시간 근로제관련 근기법 개정과 그 시행에 따른 법률문제”, “성과급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가 열렸다.

2학기를 맞아 10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문제연구회에서 제6차 국제포의회담을 개최했으며, 한국법사회회 원예발표회도 열렸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토론회(“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또한

개최되었다.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정기세미나(“노동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프랑스법리”)도 있었다. 11월에는 법학연구소 ETRI 용역관련 전문가회의(“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및 공정경쟁관련법령 제개정 연구”)와 법무부용역관련 전문가회의(“체제전환국의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가 있었고, 세포용역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워크숍(“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과 세포용역연구의 미래”)이 개최되었다.

최용우 기자(sunever22@dreamwiz.com)

교수 집담회

법과대학에서는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집담회에서는 주로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발표를 맡고 있으며, 외부 인사가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명예교수를 비롯한 법과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며, 교수들 간의 집담회인 만큼 심도 높으면서도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져 각 법학 분야 간의 이해를 돕고, 상호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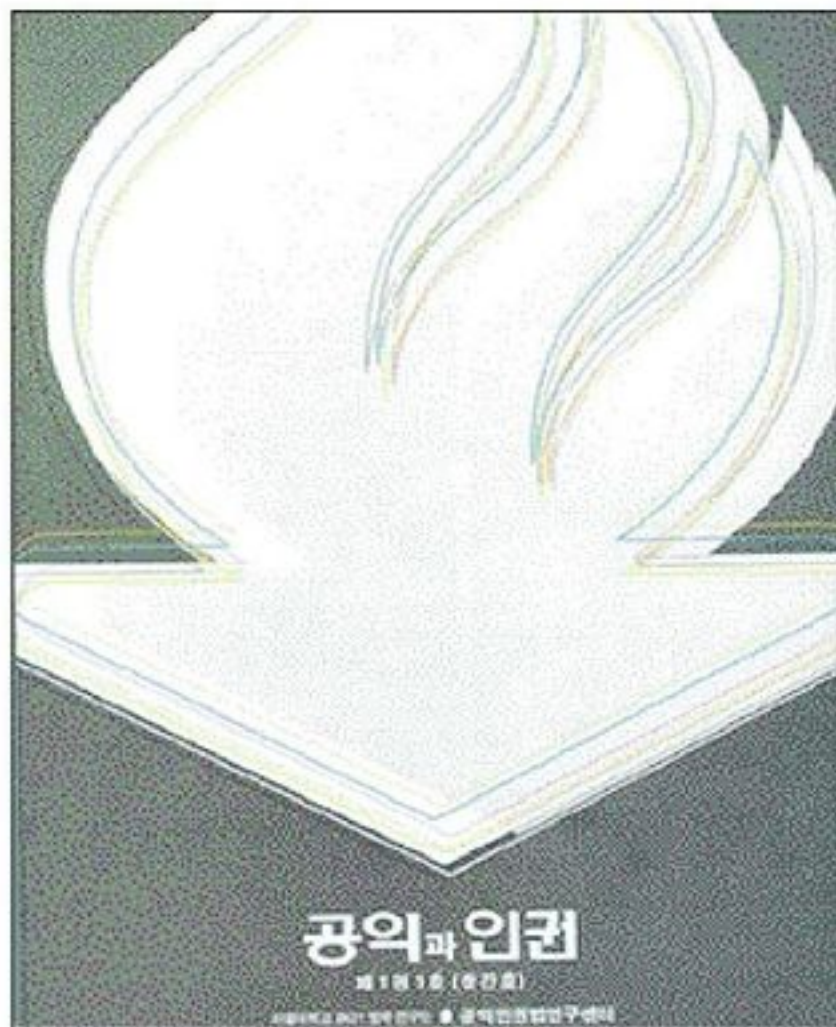


◆ 아래는 올해 열렸던 교수집담회의 목록이다.

회차	주제	발표자	일시
1	법해석一考	조홍식 교수(서울대 법대)	3.17
2	Coping with the past: German compensation for WW II forced labor	Geier(주한독일대사)	3.23
3	한국 사회과학론의 화두로서의 「독립신문」	김홍우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3.31
4	미국법상 부모의 자녀치료거부에 따르는 법률문제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대)	4.7
5	German Legal Education Reform -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P. Gilles 교수(서울대 법대 Visiting Professor)	4.14
6	조약의 폐기와 국회동의	정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4.21
7	펠젠-실빙-유기천 : 세계 법학교류사의 일면	최종고 교수(서울대 법대)	4.28
8	상사불법행위 시론 :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대)	5.12
9	Copying and Competition	Thomas Rubin(MS社변호사)	5.19
10	63학생운동과 서울대 법대의 수난	장명봉 교수(국민대 법대)	6.2
11	쇄미록에 나타난 가계계승의식	정궁식 교수(서울대 법대)	6.9
12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Korean Case	John Ohnesorg 교수(Wisconsin 大)	6.16
13	법학전문대학원 : 일본의 동향과 한국의 논의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9.9
14	이승만의 「독립정신」 100주년	이상면 교수(서울대 법대)	9.15
15	헌법·가족법·전통	윤진수 교수(서울대 법대)	9.22
16	민법전 제정과정에 관한 잔편	양창수 교수(서울대 법대)	10.6
17	전통윤리의 법적 강제와 법의 중립성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맥락에서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대)	10.13
18	기술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통합: 유럽과 미국의 반독점사건 업데이트	Brad Smith(MS社변호사)	10.20
19	The Pre-emption Doctrine and the North Korean Case	Jasper Kim 교수(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호문혁 교수(서울대 법대)	10.26
20	ADR 체계의 정비방안		11.3
21	재벌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 과연 부당한가?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대)	11.10
22	서울법대 귀중분서실의 의의와 과제	최종고 교수(서울대 법대)	11.17
23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11.24
24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대한 고찰	백종현 교수(서울대 철학과)	11.27
25	The Legal Education in China and its Reform	Li Juqian 교수(서울대 법대 Visiting Professor)	12.01



공익과인권 창간



4년 전, 최초의 대학 인권법연구소로 탄생했던 공익인권법연구센터(소장 정인섭 교수, 이하 공익인권법센터)는 그동안 인권법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정기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학술행사 및 집담회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NGO 활동가를 위한 인권법 강좌를 열어 실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활동의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출판물 제작에도 힘써, 그 결과 지금까지 여섯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러한 활동을 해 온 공익인권법센터가 드디어 공익, 인권법 전문 학술지인 '공익과 인권'을 세상에 내 놓았다. 많은 법학 학술지가 있지만, 공익, 인권법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것은 '공익과 인권'이 처음이다. 올해 초 창간호가 나온 이후, 지난 8월에 제 2호가 발간되어 현재까지 총 두권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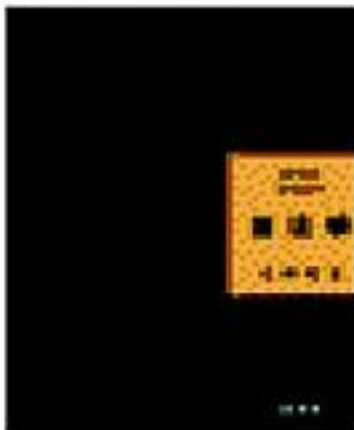
창간호에서는 사법개혁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본 최대권 교수의 논문 등 일반논문 4편 외에, 작년 10월에 법과대학에서 열렸던 〈故 최종길 교수 30주기 추모학술회의〉의 발표문들을 얹어 특징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자를 동일시하는 차별관념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학부생 4인 공동논문도 '연구 노트'라는 이름으로 창간호에 게재되었다.

박준업 기자(dink717@hanmail.net)

● 서울법대 교수진의 최근 저작물 소개

성낙인 / 『헌법학』

제4판 / 법문사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용 교과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 사항들은 축소, 최근까지의 판례와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2003년 1월 22일에 국회에서 새로 제정한 '대통령직인수예관법'과 개정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의서의중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김동희 / 『행정법 I』

제10판 / 박영사



행정법I은 일반 행정법 작용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판에서는 기본적 이론체계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였다.

김동희 / 『행정법 II』

제10판 / 박영사



행정법 II에서는 경찰작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번 판에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관한 구판의 기술 내용을 상당 부분 정리 보완했다. 또한 경제법 부분에서는 경제행정조직에 관한 부분을 새로이 다루고 있다.

행정법연습은 기존에 다룬 사례들을 그동안의 법령 내지는 판례 등의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는 보완하여 새롭게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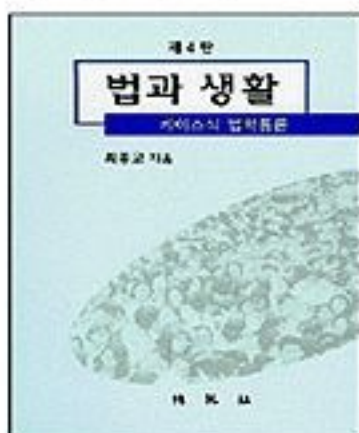
김동희 / 『행정법연습』

제7판 / 박영사



최종고 / 『법과 생활』

제4판 / 박영사



이 책의 초판은 1993년에 발간되었으며, 『법학동론』의 이론을 ‘법과 생활’의 측면에서 보완하여, 실제 생활과 사례에 대한 법적 추론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법의 현실에 발맞추어 이번에 제4판이 발간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선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김건식 / 『증권거래법』

제3판 / 두성사



증권거래법 해설서. 2002년 2판이 출간된 후 2년간 엄청난 변화를 겪은 우리 증권관련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증권거래법, 증권시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자산유동화, 파생상품거래 등을 담고있다. 이번판에서 청산결제, 통합금융법에 관한내용이 추가되었다.

권오승 / 『공정거래와 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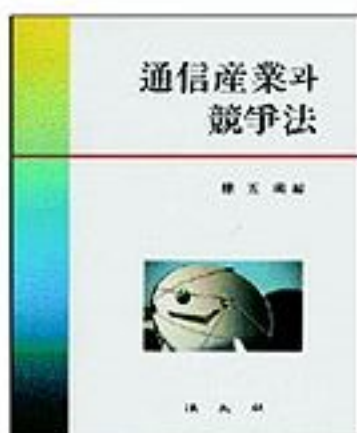
법문사



이 책은 2004학년도 제1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17기 공정거래법과정에서 사용했던 자료와 논문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현주소와 아울러 미래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오승 / 『통신산업과 경쟁법』

법문사



최근 통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전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적 측면이 필요한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의 법리와 경쟁의 원리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통신산업이 경쟁산업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이에 따라 통신법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신법제도 및 법리의 연구를 담은 책이다.

박은정 외 공저 /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이화여대 출판부



이 책은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2002년 9월에 발족한 세포융합연구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2년간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엮은 것이다. 줄기세포 관련 연구과제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수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연구지침과 심사규정,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조 / 『지적재산권법』

흥문사



이 책은 저자의 10여년의 강의와 연구결과를 모은 것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지적재산의 보호근거를 검토해 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저작권법과 의장법의 분단체제 그리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모순과 충돌 등에 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였다.

정상조 등 공저 /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의 재정립』

특허청



본 연구보고서는 등록상표와 미등록주지상표의 조화 및 합리적인 보호방안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와 입법례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해보고,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특히, 합리적인 상표보호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되는데, 기술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도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와 논의동향을 최대한 수용하고 정리해서 현행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한인섭 / 『정의의 법 / 양심의 법 / 인권의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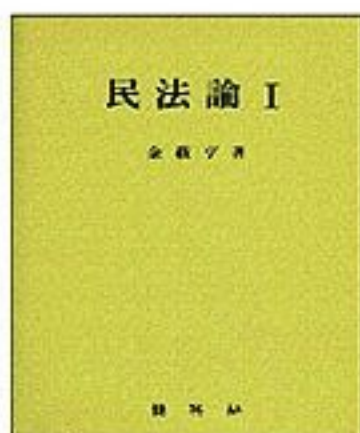
박영사



한국사회에서 법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글들을 펴낸 책. 당대의 사회정치적 현실 가운데 법률가의 양심과 고민을 집약하고 있는 글 중에서, 최선의 법적 실천이거나 중요한 쟁점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글들은 정치권력의 만법치적·만이성적 압력에 대해 법률가적 견지에서 저항한 기록들이다.

김재형 / 『민법론 I』

박영사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한 글을 엮은 책이다. 현실생활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에는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관련된 글 13편을 수록하였다. 제2권에는 제1권에 이어서, 채권법에 관련된 글 15편이 수록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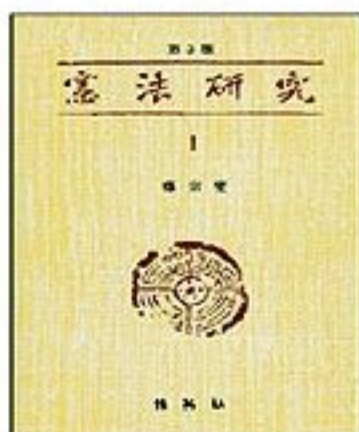
김재형 / 『민법론 II』

박영사



정종섭 / 『헌법연구 1』

제3판 / 박영사



헌법연구 1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비롯해 규범적인 의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대안으로 제시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수록했다.

헌법연구 3은 헌법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논문들을 엮은 논문집이다. 전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현실에서 발생한 일들을 추가하였다. 원문을 손대는 것은 가능한 자제하고 글의 말미에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정종섭 / 『헌법연구 3』

제2판 / 박영사



정종섭 / 『헌법소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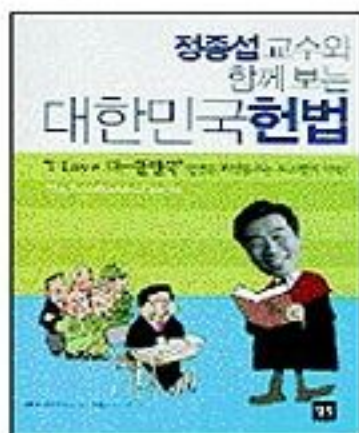
제2판 / 박영사



헌법소송법은 2002년에 초판을 간행한 지 2년만에 나오는 새판이다. 초판의 체제와 설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듬었고, 판례를 추가하였다.

정종섭 / 『정종섭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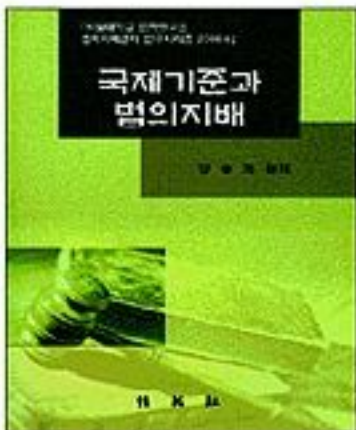
일빛



130개의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300여 쪽의 명쾌한 만화로 풀어낸 책. 서울대 법대 정종섭교수와 시사만화가 조태호가 공동집필한 책으로, 헌법을 함축된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헌법의 새로운 인식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헌법적 모순과 자신의 보장된 권리는 물론 전·현직 대통령의 언행과 행적까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가 권력 기관이 헌법의 의미를 어떻게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촌철살인의 만화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장승화 /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4-1 연구보고서. 국제화라는 화두는 근원적 정당성이나 실용적 허와 실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현실로 정착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 주제가 포섭하는 무수한 세부영역과 주제 중에 제한된 일부를 다루고 있다.

양현아 편 /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 사람생각



이 책은 2003년 11월 5일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주최로 열린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라는 학술회의의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한국 법여성학의 전개과정, 적극적 조치, 방법론 등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2부에서는 가족, 노동, 정치참여 분야 등 각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3부에서는 젠더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하고 있다.

정희철 / 『상법연구의 향기』

정희철교수정년20년기념, 인산기념논문편찬위원회



이 책은 지난 84년 정년퇴임하신 仁山 정희철 교수의 퇴임20주년기념논문집이다. 2002년 9월에 기념논문집이 계획되어 이번 10월에 발간하게 되었으며, 스승과 제재의 정과 사랑이 묻어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담아 '상법연구의 향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이 책에는 법과대학의 명예교수인 양승규 교수를 비롯하여, 법과대학의 김건식, 정상조 교수의 논문을 포함한 총 17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변준석 기자(levinfox@yahoo.co.kr), 이승민(volevo@freechal.com)

법학연구소 소개



법학연구소는 1961년 4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창립되었던 「비교법연구소」에서 기원한다. 이는 1964년 9월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67호, 제4조 5호)과 1970년 4월 서울대학교설치령의 제정(대통령령 제4870호, 제6조 1호)에 의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 교육과 법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하에 금융법센터, 기술과법센터, 법의지배센터와 법률자문실을 두고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Seoul Law Journal)」(계간)과 「Business, Finance & Law」(격월간)는 국내외적으로 권위 있는 법학연구지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법센터

국제적인 시장통합과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증하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법적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법센터는 산하에 금융법포럼과 금융법위원회, 신탁법연구회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금융법에 관심있는 학자, 정책담당자,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과법센터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이를 규율하

는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술과 법센터에서는 정보통신법, 생명공학법, 의료법 관련 분야의 분야별 연구회를 두고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서적을 발간하며 학술회의 개최 및 국제학술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직무발명이 연간 200건에 달함에 따라, 관련 법률업무를 기획하고 지도하고 있다.



법의 지배센터

법의 지배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법의 지배에 관한 의식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활동, 공익관련법 연구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법의 지배 센터 연구시리즈로서 단행본 출간과 연구발표회, 집담회 개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자문실

1996년에 학내 법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실을 설치, 서울대학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들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오고 있다.

변준석 기자(levinfx@yahoo.co.kr)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1. 설립 취지와 연혁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1996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간부사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의 최근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전문 분야의 법률이론을 발전시키고 실무능력을 제고·터득케 하여 날로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이다.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한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수	연도/학기	과 정	기수	연도/학기	과 정
1	1996/1	공정거래법	2	1996/2	지적재산권법
3	1997/1	공정거래법	4	1997/2	금융거래법
5	1998/1	조 세 법	6	1998/2	보 험 법
7	1999/1	행정소송·행정법	8	1999/2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9	2000/1	공정거래법	10	2000/2	금융거래법
11	2001/1	노 동 법	12	2001/2	인터넷과 법률
13	2002/1	공정거래법	14	2002/2	기업의 경쟁·도산과 법
15	2003/1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16	2003/2	국제통상법·정책과 실무
17	2004/1	공정거래법	18	2004/2	조 세 법

2005년도 1학기에는 '인터넷과 법률'이라는 주제로 과정이 개설되며 남효순 교수(민법), 정상조 교수(지적재산권법)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2. 성과

제1기부터 제17기까지 이 과정을 수료한 수강자의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변호사 334명, 기업체 간부 305명, 행정공무원 130명, 판·검사 84명, 공인회계사·변리사 등 44명, 기타 27명으로 총 924명이며, 각 과정의 여러 강의 자료들은 관련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3. 학사관리와 수업

2004년에 있었던 조세법과정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과정이수를 위하여 총 출석시간 15주(종합발표회 포함) 중 11주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강의와 토론은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 사이의 실제적 토론의 장이 되도록 꾸미고 있다. 그리고 블록세미나와 종합발표회, 해외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4. 자치회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의 순조로운 운영과 수강자의 자율적인 활동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수강생 자치회를 결성·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회는 자치회 회칙 제정, 자치회 수첩제작, 과정 수료 후 지속적인 연구 활동 및 친목 도모,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장

정해창 회장 인터뷰

지 난 6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정해창(丁海昌) 전 법무부장관이 새로 선임되었다. 그리하여 본 지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정 전 장관을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인터뷰에는 법과대학 뉴스레터팀의 이승민(석사과정), 최용우(00학번), 변준석(01학번)군이 참석하였다.

정해창 회장은 1937년 생으로, 56년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58년에 제10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를 합격한 후 60년에 졸업하였다. 59년부터 62년까지 공군법무관 생활을 마친 후 62년 대구지검 검사로 시작하여 88년 12월 제37대 법무부장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공직에서 활동해 왔다. 90년 말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까지 청와대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후, 형사정책연구원 원장(89년 3월~90년 12월), 한국아마추어바둑협회 초대회장(97년 5월~2001년)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94년 11월~),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장(98년 12월~)으로 재임하고 있다.

기자 : 신임 동창회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해창 회장(이하 '정') :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대학의 동창회장이 되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 책임이 막중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자 : 동창회장으로 계시면서 고충은 무엇입니까?

정 : 동창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운영의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큰 고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창회원이 수적으로도 15,000명에 이르고 80대로부터 20대까지 넓은 연령층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각계의 지도층에 기라성 같은 회원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창회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하여

동창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기자 : 법과대학에 마지막으로 와 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법과대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 : 동창회장이 된 후 한 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법학교육의 개혁을 놓고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교가 중심을 잡고 함께 슬기를 모아 한국법학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주리라 기대합니다.

기자 : 동창회의 역할과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동창회장으로서의 포부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 : 동창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이고 다른 하나는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자를 위해서는 우선 가장 가까운 회원의 모임인 기별도창회가 보다 돈독하게 운영되게 총동창회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를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보다 잦은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모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동창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장학사업 등을 보다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검찰생활을 오래하셨는데, 검찰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수사·소추·공소유지·형집행 등 나라의 형사사법 운영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런 일을 공정무사하게 해 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력적인 압력이나 물질적 유혹 또는 친분과 정실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권 행사가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권력적인 압력의 문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만, 이제 법치주의가 점차 정착되어가는 사회전반의 추세에 발맞추어 검찰의 위상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검찰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국민들이 땀받침해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기자 : 검사 재직 시절과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에 대해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 저는 1962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하여 법무부장관을 끝으로 1988년 퇴직할 때까지 긴 세월을 검찰에 봉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법무부에서 검찰행정 분야를 맡은 기간이 꽤 길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오랫동안



겪은 일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 특별히 생각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그저 맡은 일에 몰입하면서 조심조심 공직생활을 해 왔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자 : 법학, 법조계 등 법 전반에 대하여 학교에 다니실 때의 분위기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 제가 학교에 다닌 것은 1956년부터 1960년까지 낙산캠퍼스에서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상전벽해란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변화가 그러하듯이 법학+법조계도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법이라는 것은 결국 중도(中道)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김새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란 그런 것일 수 있도록 가운데를 찾아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정 : 당시 시험제도는 고등고시 사법과 과목7가지에 경제원론만 추가하여 공부하면 행정과1부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되어있어 양과에 동시 응시하는 것이 대부분의 수험생이 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유행에 따른 것이라 할까요.

기자 : 법학 공부 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있으셨는지? 그것이 현재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특히 범죄문제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늘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또 한국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깊이 탐구는 하지 못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조금씩 보아왔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만 70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늘 부족하고 잘못하는 점이 많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자 :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 법조인도 담당분야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을 갖춘 인격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수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에 종사하는 법조인은 청렴과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자 : 범죄방지재단 이사장으로 봉직하시는 등 바쁜신 와중에도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 참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 : 이번 12월 8일이 한국범죄방지재단 창립 10주년이라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일본에는 아세아형정재단(ACPF,

Asia Crime Prevention Foundation)이 있는데, UN과 연계하여 범죄방지를 위한 훈련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경찰 검찰 법원 교도관들이 훈련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동남아 각국의 범죄예방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국에 협력기관이나 지부를 설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필리핀 지부 창립 때 초대받아 간 것을 계기로 한국 지부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어 그해 12월 8일에 범죄방지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범죄자 교화 및 출소자들의 갱생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문제에 대해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민간차원에서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법학회나 한국형사정책학회 등의 관련학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다산학술문화재단 일도 맡아보고 있습니다. 나주 정씨 월헌공파 종회 회장직을 11년째 맡고 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도 월헌공의 자손이어서 다산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중으로서 뜻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중중재단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998년 12월 29일에 설립하여 만 6년째가 되는데, 국내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내년 봄에 중국 칭화대학에서 우리나라 학자 7~8명과 중국학자 10여명을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열기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시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관한 설치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장관 퇴직 후 초대원장으로서 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날 인터뷰는 시종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비독을 즐긴다는 정 신임동창회장은 - 실제 바둑 아마 3단의 실력자이다- 법대동창회 바둑동호회의 창립발기인 대표를 맡기도 했다고 하였다. 다만, 동창회배 바둑대회에 출전한 적은 없다고 한다. 사무실 한켠에도 바둑판과 바둑알이 있었으며, 인터뷰하러 들어갔을 때 TV에서 바둑방송이 방영되고 있었다.

정회장은 오랜 실무 생활 중에서도 학문과의 연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이후 학술재단의 이사장직을 맡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로스쿨의 도입 문제 등 법과대학의 발전에 관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각종 재단 이사장과 변호사 활동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 못지않아 보였다. 신임동창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법과대학의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정의의 종의 유래

(1) 법과대학 정의의 종의 역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는 '정의의 종'이라는 이름의 종 두 개 있다. 하나는 15동 법대 강의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종이고, 하나는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큰 종이다.

15동 앞에 현가되어 있는 '정의의 종'은 동승동 캠퍼스에서부터 사용해 왔던 것이다. 동승동 캠퍼스 시절에는 매년 특정 기념일에 기념 타종을 하였다. 종 밑의 현판에는 '정의의 종,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는 경구가 쓰여있다. 1975년에 법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의 추가 파손되어 타종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가, 1980년에 수리하여 4월 혁명 20주년을 기념해 2월 22일에 다시 타종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 종은 많이 낡았으므로,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의 건립에 맞추어 새로운 정의의 종을 제작·현가하기로 동창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공사대금 관계로 지연되다가, 96년 5월에야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의 준공일인 1996년 12월 18일에 이르러서야 국산 법학도서관과 법대 강의동에 둘러싸인 부지에 설치·현가되었다.

동승동 캠퍼스에서 사용하던 '정의의 종'이 서양의 종 모양을 따르는데 비해, 새로 제작한 '정의의 종'은 우리 고유의 전통종을 기본모델로 하였다. 종의 상대에는 구름과 본교의 교조인 학을 이용한 도안이 장식되어 있으며, 유곽에는 공평을 상징하는 저울과 당초분이 들어있다. 종북의 상징 부조물로는 조선시대의 대사헌 흉배로 사용되었던 해태상을 이용하였고, 하대에는 인왕산과 북한산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자리하였던 동승동의 낙산과 관악산 등을 도안하여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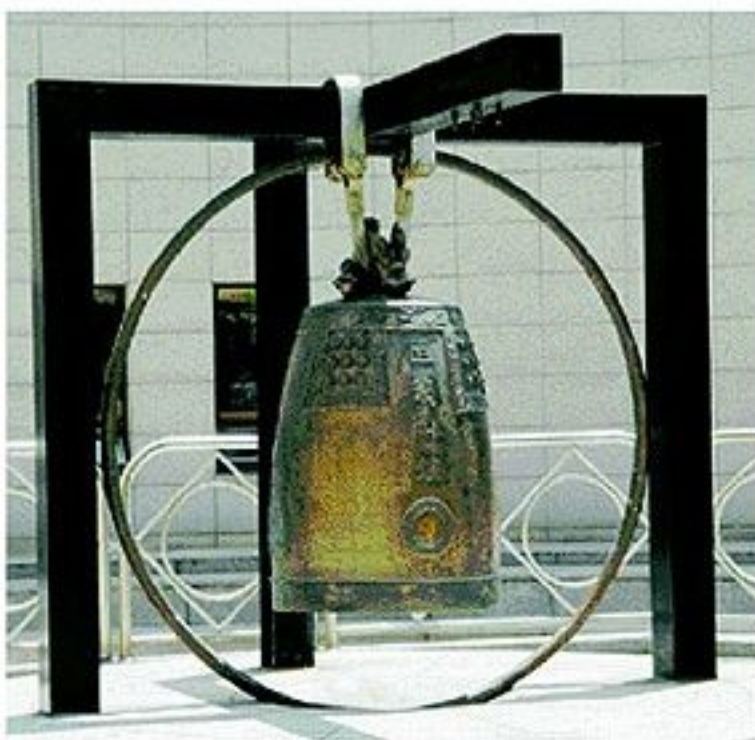
이 정의의 종의 제작과정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종 전문연구소와 전문가, 종 제작사가 참여하였다. 이영배 서울공대 명예교수, 서울공대 이장무 교수, 서울공대 나형용 교수, 문양도안·도면작성에 서울미대 최만린 교수와 동국대 박동해 교수가 참여하였다. 종의 주조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되어있는 광복 50주년기념 '통일의 종' 등을 제작한 홍종사가 담당했다.

변준석 기자(levinfox@yahoo.co.kr)

(2)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의 유래

15동에서 법학도서관 쪽으로 난 서양식의 자그마한 종 바로 밑에 부착된 팻말에는 '정의의 종'이라는 표시 외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유명한 법언이 새겨져 있다. 이 법언은 물론 서양의 라틴어 법격언인 "Fiat justitia, ruat caelum"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우리의 법언과 같은 취지로 흔히 인용되는 것이 "세상이 망할지라도 정의는 세워라"인데, 그 라틴어 원어는 "Fiat justitia, pereat mundus" 또는 "Fiat justitia, et pereat mundus" 내지 "Fiat justitia et pereat mundus"이다. 이 법언은 16세기의 독일 황제 페르디난트 1세(1556-1564)가 자신의 표어로 삼음으로써 확고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애초에 그 의미는 "正義가 행사되고 倨慢은 零落할 지이다(Es muß Gerechtigkeit geübt werden und Hochmut zu Fall kommen)"라는 것이었으며, 정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자는 권세가의 私利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결국 강자에 굴하지 않는 공평한 법의 적용을 강조한 말이었다.



그러나 mundus가 또한 '세계'를 의미할 수 있었으므로 대부분 오해되어 세상의 몰락을 감수하는 正義狂信主義(Gerechtigkeitsfanatismus)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오해를 야기한 사람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였는데, 그는 1535년 5월 10일의 구약 시편 110장에 관한 제2의 설교에서 이 법언을 "Es geschehe, was recht ist, und sollt die Welt drob vergehen(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행해져라)"라고 번역하였다. 이후 Johann Christoph Beer도 루터와 유사하게 번역하였다. 이 법언이 처음으로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Marino Sanuto의 『日誌 33(I diarii 33, Venedig 1892, 기록 자체는 이른 16세기)』이며, Johannes Manlius의 『상투어모음(Locorum communium collectanea, Basel 1562)』, 419에서는 하드리아누스 6세에 의하여 양육된 페르디난트 1세가 이 법언을 자신의 표어로 선택했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17세기에 Zinzendorf의 『적언집(Apophthegmata, Straßburg 1626)』, 107은 이것을 "Das Recht muß seinen Gang haben, und sollte die Welt darüber zugrunde gehen(세상이 망해도 정의는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번역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오해된 pereat mundus로부터 더 극적인 표현인 ruat caelum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설하고, 이 법언은 사실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야 더 할 나위 없이 존철살인의 표미가 있는 표현이지만, 공평무사한 법의 적용을 강조한 이 법언은 자칫 오용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가장 嚴正한 법은 가장 不正한 법이다(Summum jus, summa injuria)"라는 이미 키케로 시대에 인구에 회자되던 俚言이 드러내듯이, 정의 자체도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극도의 不正義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설자들이 정의 광신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 또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정의라고 믿는 주관적 신념의 오만과 아집과 독선과 오기에 찬 "무자비"한 법의 관철로 나아감으로써 정의를 허울로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에야 경계하고 또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몰락을 무릅쓰는" 우리의 법언을 19세기 로마법의 대가였던 독일의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학술활동의 후기에 목적법학의 공리주의적인 표어 -"세상이 흥하도록 정의를 세워라(Fiat justitia, ut floreat mundus)"-로 치환하자고 주장했는데, 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흠잡을 데 없는 정석화이지만, 이 법언의 원래의 의미를 오해한 바탕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제안이고, 그런 만큼 법언의 뒷부분의 원래의 특정한 지시내용, 즉 법-정의의 실현에 있어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모습을 촉구하는 대목이 빠져버린 밋밋한 추상적 當然之事の格率이 되고 말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 할 정의의 사도라는 자긍심과 신념이야말로 정녕 법학도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그 권력이 여하한 것이든 간에,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일 뿐일 터이다. 그러고 보면, Fiat justitia et pereat mundus-원래의 취지(강자에 굴하지 않는 공평한 법의 적용)로 이해하든, 루터 이후 오해된 요즈음 통용되는 취지(정의 실현의 엄정함에 대한 일반적 강조)로 이해하든-와 Fiat justitia, ruat caelum은 모두가 그 비유의 驚天動地할 스케일과 함께 여하든 우리 법대의 정의의 종에 참으로 걸맞은 법언이다.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최병조 교수(로마법)

※이상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뉴스레터 홈페이지(jus.snu.ac.kr/~lawnews)에 실린 법률에세이(9월 10일자)를 요약한 것입니다. 저자와의 합의 아래 각주를 생략하였습니다.



전혜성 박사

지난 9월 1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전혜성 박사의 “Toward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ERI Law Data”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법의 중요성과 국제법과 한국법의 조화에 대한 연구에 관한 강연이 끝난 후에 법과대학 뉴스레터팀에서 따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전박사는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대단히 낮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적절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과도기에는 분명 필요 이상의 고생을 감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수록 자신의 상황을 늘어놓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고,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에 공헌할 수 있는 주장을 하거나 기여를 하면 그것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인들의 세계에 대한 시각에 관해서는, 미국 자체가 넓기 때문에 미국사람들은 미국 내를 여행하고 알아 보는데 그치는 경우도 많고 미국 학생들이 바깥을 들여다보지 않으려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미국 전체의 경향이라고 선불리 말할 수는 없으며, 미국 내의 엘리트층은 외국에 나가거나 교류하는 것에 대단히 활발하다고 하였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가 ‘미국화’가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나라에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화가 세계화의 모든 것은 아니며,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세계화’라는 것이 어떠한 수준에서 되었고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 표준은 아직 서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전박사는 한국의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1952년 동양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동양문화연구소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였다.

그리고 전박사는 사회학과 인류학을 전공하였지만, 비교법문화 등 법에 관련하여서도 공부를 하였으며, 사회학, 인류학적 접근은 법을 공부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는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재승덕(才勝德-덕이 재주를 따르지 못함)하지 말라’는 말을 강조하였다.

송지연 기자(jenovia1981@hotmail.com), 한승표 기자(lexhahn@yahoo.co.kr)



고홍주 예일 로스쿨 학장

한국계 미국인 고홍주(48·미국명 헤럴드 고) 예일대 법대 석좌교수가 올해 7월 예일대 법과대학원 학장에 취임하였다. 고 교수는 하버드 대학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부 학위를 받고,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국제법과 인권문제, 국제경제법 전문가이며, 2000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학장은 인터뷰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는 점에 대하여, 미국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예일대 법과대학원의 학장이 된 것부터가 이미 소수자에 대한 관용 정신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로스쿨제도의 장점에 대하여는, 법학은 복합적인 학문이므로, 사회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보다 많은 소양을 가지고 있을수록 법학 공부가 쉬울 것이므로 학부에서 다른 기초과학을 공부한 뒤 로스쿨에서 법학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소송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순수한 목적으로 관여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목적으로 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공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Clinton Doctrine을 포기하고, 2001년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는 등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송지연 기자(jenovia1984@hotmail.com), 한승표 기자(lexhahn@yahoo.co.kr)



● 법과대학 학술제 개최

2004년 9월 6일 오후,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성낙인 학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각 법학회 대표, 법대 학생회장이 정의의 종을 울리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제의 막이 올랐다.

성낙인 학장은 격려사에서 법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적 추론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꼽으면서,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법적 사유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직 모의재판의 전통이 정착되지 않은 헌법, 행정법, 노동법 등 다른 법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지적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9월 6일)은 국제법학회의 제37회 모의국제사법재판이 열렸다.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ICC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ICC가 한번 처벌받은 전쟁범죄자들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므로 재판적격성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 ICC가 범죄발생 3년 후에 이들을 재판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 피해국이 이들 전쟁범죄자를 ICC로 인도하는 것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위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였다. 특히 국제법학회는 올해 발생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문제들 중 하나를 주제회합으로써 시사성 짙은 토론의 장을 펼쳐 주었다.

둘째 날(9월 7일)은 경제법학회의 제8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가 열렸다. '인스턴트 메신저를 둘러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관련시장의 확정, MXN메신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이를 바탕으로 MXN 메신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MX의 네트워크 공유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학생들이 종종 접하게 되는 온라인상의 MSN메신저를 문제로 삼음으로써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셋째 날(9월 8일)은 형사법학회의 제46회 형사모의재판이 열렸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자살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 그리고 알리바이 성립의 한계를 주제로 삼았다.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답글을 단 자에 대해서 목격자 증언의 증명력과 알리바이의 성립여부, 자살 방조의 고의 여부, 사이트 운영자의 속칭 '자살사이트' 개설의 고의 여부와 선행행위(사이트 개설)에 대한 부작위범 성립여부 등을 쟁점으로 하였다. 특히 형사모의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 영미식 배심재판의 형태를 취하였던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동운 교수



는 격려사에서 배심재판이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재판형태이며 이를 통해 구두변론주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모의재판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넷째 날(9월 9일)은 사법학회의 제37회 민사모의재판이 열렸다.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자는 종중제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하였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에 생동감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법적으로 종중원 지위가 성년 남자에 한정되고 여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이 현재의 관행과 헌법에 비추어 유효한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



다. 소송법적으로는 자신의 종중원지위가 부정되지 않은 후손이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상의 모의재판은 아직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생들이 준비했다고는 믿기 어려

울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어졌다. 매우 진지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학생들은 종종 재치 있는 농변과 유머러스한 연기력으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도 했다. 실제로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방학기간인 7월과 8월 동안 실무가들과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스터디를 병행하여 사안 해결을 시도하는 등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고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소송이나 심의과정을 볼 기회는 거의 없다. 딱딱한 이론과 서적에만 파묻혀다 보면 현실적인 사안 해결능력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공부하는 내용이 추상적으로 치달아 그 흐름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법과대학 학술제는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실무에 접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다만 1년에 1회 개최되는 법과대학 학술제인 모의재판은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안타까움을 남긴다. 모의재판은 백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곳은 주로 수업 장소와 학술회 등이 개최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연습한다거나 실제로 개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고정적인 장소가 있다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의재판을 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수업과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직접 발휘해 보는 동시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법학 공부에 더욱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수 동정

백충현 교수 퇴임

백충현 교수는 지난 36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올해 8월 31 일자로 정년을 맞이하였다. 9월 6일에는 주산기념홀에서 '영토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년맞이 기념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백충현 교수는 1961 년 본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5년에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LL.M.과정을 거쳐 다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 정을 받았다. 독도와 백두산 등 영토문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백두산」 천 지양분설의 국제법적 평가, 「독도-죽도에 대한 영유권 논의」, 「국제법으로 본 1900 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한국측 현황 한일 관계 국제법문제」 등의 논문을 저술한 바 있다.

최종고 교수 중국 山東大 명예교수자격 취득, 北京大 강연 및 프라이부르크대학 동창회 한국대표로 참석

최종고 교수가 중국 산둥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었다. 최 교수는 작년에도 중국 南京大에서 명예교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중국에서 명예교수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중국의 각 대학에서는 최근 해외의 우수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대 하여 자기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명예교수자격수여 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평소부터 동아시아 3국의 법에 관한 이론과 철학적 기초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 던 최 교수는 세계법철학회이사 자격으로 지난 10월에 북경대에서 강연을 한바 있다. 그리고 최 교수는 제4차 전세계 프라이부르크 동창회에 서울법대 최종고 교수가 한 국대표로 참석하였고, 독일 「바디체 자이팅」에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동창회를 소개한 바 있다.

이상면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취임

이상면 교수는 올해 1월에 대한국제법학회의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 다. 1963년에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는 故 유진오 선생이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래 매년 정기 학술행사와 논총 발표를 통해 활발한 국, 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 히 지난 10월 말에 개최된 2004년 정기 학술행사는 국내학자들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행사들과 달리, 싱가포르, 중국, 태국 등 외국의 여러 국제법학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범세계적 학술행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면 교수는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한국제법학회의 50년사를 담은 편찬 작업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교수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취임

안경환 교수는 2003년 5월 20일 발족된 학계와 시민단체, 재야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무부 산하의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4년 3월부터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족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자율화·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초에는 미국의 산타클라라(Santa Clara)대학에서 비교헌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현재에는 고 조영래 변호사의 평전 마무리 원고 작업을 보고 있다.



성낙인 학장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 취임

성낙인 학장은 2004년 7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 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이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관계자, 언론인, 현직검사 등이 참여하여 그간 검찰수사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인권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하여 새로운 수사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신동운, 한인섭 교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선임

신동운 교수와 한인섭 교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대법원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특별기구이며, 이번 12월에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개혁건의를 하게 된다. 지금은 현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학대학원과 관련하여 2008년에 로스쿨을 실시하기로 결의했으며, 배심제와 참심제 등 시민의 사법참여를 주제로 논의하고, 대법원의 구성, 형사소송과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개혁, 그리고 법조일원화 등의 개혁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교수 동정

권오승 교수 아시아법연구소 설립

권오승 교수는 2004년 6월18일 아시아법연구소(Center for Asian Law)를 설립하였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 및 운용하고, 나아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한국법의 성과를 보다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아시아 및 세계와 두루 교류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아시아법연구소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조사와 비교연구, 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신동운, 최병조 교수 20년 근속 표창

지난 10월 20일 법과대학의 신동운 교수와 최병조 교수의 20년 근속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박정훈 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낙인 학장이 정운찬 총장을 대신하여 표창장과 기념반지를 수여하였다.

신동운 교수는 법과대학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1984년 7월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월에 본교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병조 교수는 1985년 괴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본교에 부임하여 로마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창희 · 장승화 교수 共編著,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MS사의 'Rule of Law'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담아 이창희 교수와 장승화 교수가 공동으로 정리한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가 (자세한 소개는 '정의의 중' 제2판 참조) 대한민국학술원 2004년도 기초학문분야 사회과학분야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각종 자문 및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초학문 육성계획에 의해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학술원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초판 간행된 학술도서 및 동서양고전 국역서 중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지난 11월에 발표하였는데,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가 여기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변준석 기자(levinfx@yahoo.co.kr), 박준엽 기자(dink717@hanmail.net),
김지연 기자(thita@hanmail.net), 박희원 기자(freetodream@hanmail.net),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를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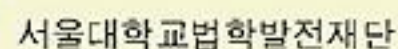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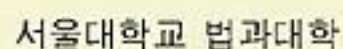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현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 연구 환경 및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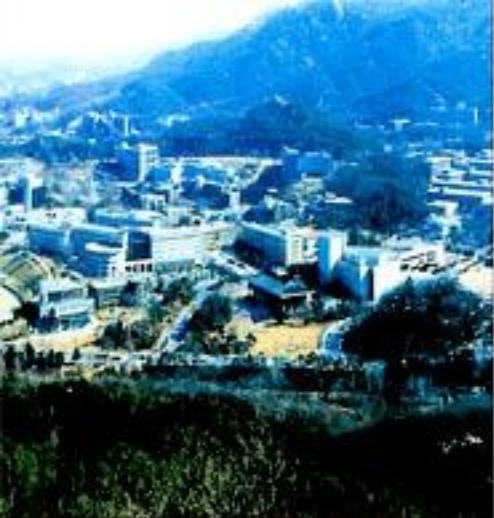
約 定 書

성명(기관명)										
직 장 명	직 위 :									
전 화 번 호	자택 : 휴대전화 :			직장 : e-mail :						
주 소 (우편물 발송지)	□□□-□□□									
본교와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 동문 ☐ 학부모 ☐ 법인/단체 ☐ 기타			입학년도 : 학생성명 : 대표자성명 :			입학년도 :			
약 정 금 액	일금 원 (₩)									
납 부 방 법 (해당란에 표시)	☐ 무통장입금 ☐ 지로입금 ☐ 자동이체(CMS)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조흥 서울대지점 873-03-006786 예금주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지로번호 6308816 (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 부 기 간 (해당란에 표시)	☐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납부	
참 여 내 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및 지출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